



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
(주)대한콘설탄트,(주)한맥기술

I·SEOUL·U

우 01466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9자길20 3층 / ☎ (02)978-5302 / 전송 (02)978-5303

문서번호 : 대콘(초안산) 제18 - 22호

시행일자 : 2018. 01. 31 .

수 신 :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

참 조 : 토목부장

선 결	부장	가인	지 시		
접	일자	'19. 2.7	결 재 공 람	과 장	
	시간	18:30			
수	번호	2451			
	처리과	교량건설과			
	담당자	노승재			

제 목 : 하도급 계약(변경) 검토 보고 [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]

1. 한개 제 2018-037(2018.01.26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「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」의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31조 및 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: 1)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.

2)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통보 관련서류 1부. 끝.

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
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오 세 영



#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

기술검토 건명	하도급【교량공 中 하부공사(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)】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
공사명	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
검토기간	2018. 01. 26. ~ 01. 31.
근거공문	한개 제2018-37(2018-01-26)호

## □ 개 요

「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」와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접수된 교량 하부공사(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)에 대한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통보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.

## □ 관련근거

-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32조
- 나.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

## □ 검토내용

가.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【교량공 中 하부공사(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)】

구 분		계 약 현 황		비 고
		당 초	변 경	
하 도 급 업 체 명	업 체 명	(주)수명건설		
	대표이사	정 명 희		
	주 소	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153번길 6 (증포동)		
면 허 종 류		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		
		경북 97-10-14 경북 97-02-05		
공사금액 (부가세 포함)	시공능력 평 가 액	철콘 ₩2,525,000,000원 토공 ₩2,427,000,000원	철콘 ₩2,525,000,000원 토공 ₩2,427,000,000원	
	하도급 부분금액	₩1,315,413,000원	₩1,525,964,000원	증)210,551,000
	하도급 계약금액	₩1,361,349,000원	₩1,516,900,000원	증)155,551,000
	하도급율	<b>103.49%</b>	<b>99.41%</b>	
하 도 급 통 지 일 자	계 약 일	2017년 12월 01일	2017년 12월 27일	
	감 리 단 접 수 일	2017년 12월 27일	2018년 01월 26일	

나. 하도급 공사기간 변경현황 【교량공 中 하부공사(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)】

구 분		계 약 현 황		비 고
		당 초	변 경	
하 도 급 공사기간	착공일	2016년 10월 01일	2016년 10월 01일	"변경없음"
	준공일	2018년 04월 28일	2018년 04월 28일	

다. 하도급 검토내용 【교량공 中 하부공사(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)】

검 토 사 항	검 토 결 과
가. 하도급 내용이 통지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의 여부	통 지
나. 하도급 사유	전문건설업체
다. 하도급 공종 : 교량공 中 하부공사 (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)	적 정
라. 하수급자 보유면허적성성 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) 철근콘크리트공사업 (경북 97-10-14) 토공사업 (경북 97-02-05)	적 정
마. 통지기일(계약일로부터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) - 하도급계약일 : 2017. 12. 27 - 하도급통보일 : 2018. 01. 26	적 정
바. 하도급 공종이 원도급에 반영되어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공종인지 여부(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16조)	반 영
사. 계약의 적정여부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) - 하도급부분금액에 기계경비/보험료/안전관리비/기타경비 등 도급에 반영된 모든 제경비(수급인일괄가입제외) 포함여부 - 불공정한 하도급조건이 있는지 여부 - 공동수급체(대표권자) 전체가 날인 하였는지 여부	적 정
아. 시공능력의 적정여부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 4항) - 시공능력금액(철콘) : 2,525백만원 (2016년) (토공) : 2,427백만원 (2016년) - 하도급금액 : 1,516백만원 (원도급액 1,525백만원)	적 정
자.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6조 2항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(하도급계약서, 공사내역서, 예정공정표,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, 하도급동의서, 직접지불합의서 등)	적 정
차. 하도급율의 적정여부(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4조1항) 도급금액대비 하도급율(82%)의 적정성(하도급율 99.41%) 예정금액대비 하도급율(60%)의 적정성(하도급율 87.31%)	적 정
카.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(건설기술자배치기준) 시행령35조2항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적정성 (중급기술자-김주옥)	적 정
타. 시공, 품질, 안전, 장비, 인력 등 시공계획의 적정성	공사시방서적용

□ 검토의견

상기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,

- 본 하도급 변경계약 건은 『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』, 『동법 시행령 34조』에 의거 하도급 변경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, 도급자의 계약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계약변경은 적정 한 것으로 판단됨.      끝.

검 토 자

소속 :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오 세 영 (인)

